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정·등록취소 전문기관의 재지정·등록 제한〉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182호, 제2209183호, 제220918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 의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0.
3. 회부연월일 : 2025. 3. 2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 의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0.
3. 회부연월일 : 2025. 3. 2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 의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0.
3. 회부연월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단서 신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단서 신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3건의 개정안은 각각 「디자인보호법」·「상표법」·「특허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등록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지정·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9조제1항 단서 신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조제2항 단서 신설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8조제2항 단서 신설).

[표 1] 조문대비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 ----- ----- ----- ----- ----- .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생략)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다만,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생략)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 다만,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디자인보호법」·「상표법」·「특허법」은 전문기관 지정(「디자인보호법」)·등록(「상표법」·「특허법」)과 관련하여 각각 ① 법률에서 전문기관을 지정·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을 받은 경우, 지정·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지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시행령에서는 지정·등록기준을 규정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하여 전문기관 지정·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 전문기관 지정·등록 및 취소 관련 조문

구 분	주요내용
디자인 보호법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u>다만,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u>

구 분	주요내용
	<u>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4. 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 없을 것
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상표검색 2. 상품분류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표법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u>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u> 1.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2.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처리기준을 갖출 것 4. 업무와 관련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구 분	주요내용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u>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등록 금지 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각각의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지정·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다시 지정·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문기관의 지정·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하며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하여 전문기관 지정·등록이 취소된 법인’ 외에 ‘그 법인에서 취소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지정·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누락하고 있는데,

임원은 법인 운영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면서 법인을 대리

하여 업무를 집행한다는 점과 법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소속 임원에 대해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입법례들¹⁾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특허청**은 하위 법령에 규정된 전문기관 지정·등록 제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문기관 지정·등록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된 전문기관에 대한 제재’도 같이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상표전문기관의 임직원 및 대표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2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제47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2. (생략)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 라. (생략)

4. ~ 6. (생략)

동 사유에 해당하면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²⁾,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안³⁾)과 개정안과 유사하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5)(이상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8

2) 의안번호 제2205812호(2024.11.22. 발의)

3) 의안번호 제2205882호(2024.11.26. 발의)

4) 의안번호 제2209352호(2025.3.26. 발의)

5) 의안번호 제2209362호(2025.3.26. 발의)